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 보도 자료



인체 보건 및 환경 보호 : 집행위원회, 의도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을 첨가한 제품을 제한하는 법적 조치를 채택.

2023년 9월 25 일 브뤼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 는 오늘 자로 EU의 화학물질 관련 법령인 REACH 개정안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을 첨가한 제품을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하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의 큰 행보를 내딛으려** 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 시, **약 50만 톤에 달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미세플라스틱 판매 및 사용 시 의도적으로 첨가한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되는 제품 판매 역시 금지된다. 개정안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대해 개정안의 면제 및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금번 새롭게 채택한 제한 조치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좀 더 폭넓은 정의를 적용하여, **유기물질이며 용해되지 않고 난분해성인 크기 5 밀리미터 이하의 모든 합성 고분자 물질을 포함한다.** 이렇게 폭넓은 정의를 적용하는 이유는 최대한 많은 제품들에 대해 인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제한 조치 대상 제품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스포츠 시설 내 지면에 사용한 인공 입자형 충전재 (의도적으로 사용한 미세플라스틱의 가장 큰 발생원인);
- 각질 제거 (마이크로 비즈) 또는 특정한 질감, 향, 색상을 첨가하기 위해 화장품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 미세플라스틱;
- 그 외 세제, 섬유 유연제, 반짝이 장식재(glitter), 식물 비료, 식물 보호용 제품, 장난감, 의약품 및 의료 기기 등.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제품 또는 사용 시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되지 않는 제품들은 판매 금지 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기업들은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의 사용 방법 및 폐기 방법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실행 계획

개정안이 20일 후 시행되면 가장 먼저 쉽게 떨어져 나오는 반짝이 장식재 및 마이크로비즈와 같은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가 실행될 예정이다. 그외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는 전환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이해당사자들이 대체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보다 더 긴 유예 기간을 부여한 후 판매 금지 조치가 시행될 것이다.

배경

위원회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과 [새로운 순환 경제 실행 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에 명시한 바와 같이,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염 제로 실행 계획 \(Zero Pollution Action Plan\)](#)에 따르면, 위원회는 2030년까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을 30% 저감하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위원회는 플라스틱 폐기물 및 쓰레기, 우발적 또는 비의도적인 방출 (예. 플라스틱 펠릿의 마모, 타이어의 마모 또는 의류에서 방출되는 미세플라스틱), 그리고 제품에 의도적으로 사용된 미세플라스틱 등 다양한 발생원으로부터 생성되는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연합 단일 시장의 분열 위험을 방지하는 동시에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제품에 의도적으로 함유된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위해성 및 유럽연합 전체의 추가 규제 조치 필요 여부 평가를 요청하였다. ECHA는 특정 제품에 의도적으로 함유된 미세플라스틱이 통제되지 않은 채 환경으로 배출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를 제한하도록 권고하였다.

ECHA에서 제공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관련 제한 조치를 담은 REACH 개정안 초안을 작성했으며, 이에 대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긍정적인 투표 결과에 이어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입법하였다.

자세한 정보

[의도적으로 첨가된 마이크로플라스틱의 제한 조치에 대한 질의 및 응답](#)

[채택된 제한조치 상세 법령 링크](#)

[마이크로플라스틱에 대한 유럽화학물질청의 입장](#)

[오염 제로 실행 계획\(Zero Pollution action Plan\)](#)

[새로운 순환 경제 실행 계획 \(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IP/23/4581

인용 의견:

이러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여 유럽연합 내 기업들이 환경을 위한 정책에 기여하고, 화장품부터 세제 그리고 스포츠 시설 표면충전재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이고 미세플라스틱이 없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유럽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혁신적인 제품에 투자 및 연구·개발을 하는 유럽연합 내의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더욱 경쟁력 있고 탄력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Thierry Breton,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산업 분과 소위원회 위원 - 2023년 9월 25일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플라스틱을 금지하는 조치는 환경과 인체 건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해결할 것입니다. 미세플라스틱은 바다, 강, 육지는 물론 우리가 먹는 음식과 식수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취하려는 조치들은 매우 작은 입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오염을 줄여나가는 데에도 큰 진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Virginijus Sinkevičius,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해양 및 수산업 소위원회 위원 - 2023년 9월 25일

보도자료에 관한 연락처:

[Johannes BAHRKE](#) (+32 2 295 86 15)

[Ana MARTINEZ SANJURJO](#) (+32 2 29 63066)

[Adalbert JAHNZ](#) (+ 32 2 295 31 56)

[Daniela STOYCHEVA](#) (+32 2 295 36 64)

일반적 문의 사항: [Europe Direct](#) by phone [00 800 67 89 10 11](#) or by [email](#)